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료제출요구 실효성 확보 및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699호)

2025.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 공직후보자 임명·지명 시 통지	3
2. 자료제출요구 실효성 확보	6
3.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등에 대한 처벌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은희 · 서일준 · 김용태 · 이성권 · 서천호 · 신성범
박정하 · 서범수 · 이인선 · 조배숙 · 서명옥 의원
(11인)

2. 제 안 일 : 2025. 7. 24.

3. 회 부 일 : 2025. 7. 25.

※ 의안번호 : 1169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등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선서를 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여 일부 결함이 있는 공직후보자의 지명 또는 임명이 강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대통령, 대법원장이 공직 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는 경우 국회에 그 사실과 이유를 알리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나.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허위 진술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다. 자료제출의 대상을 공직후보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에 거부하는 기간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허위 진술의 죄를 규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에 대한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를 규정함(안 제16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 공직후보자 임명·지명 시 통지

개정안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한 경우 국회에 그 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③ (생략)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④ ----- ----- ----- ----- -----.
<u><후단 신설></u>	<u>이 경우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국회에 임명 또는 지명의 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u>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6조¹⁾는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1)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

거치도록 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는 그 인사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나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음.

그런데,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지명을 한 후 이를 국회에 알리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권한을 가진 국회가 임명 또는 지명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국회법」 제119조²⁾는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국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인사청문과 관계 없이 본회의·위원회의 출석·발언 대상인 국무위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별개의 절차이고, 인사청문 대상이면서도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직후보자³⁾가 다수 존재하여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임명·지명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2) 「국회법」 제119조(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가정보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및 한국방송공사 사장

이에 개정안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헌법 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한 경우 국회에 그 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국회가 임명 또는 지명 여부와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 또는 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여 임명 또는 지명한 경우만 국회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①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임명 또는 지명한 경우, ②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였는데 임명 또는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여 임명 또는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도 인사청문을 실시한 국회 입장에서는 그 임명 또는 지명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자료제출요구 실효성 확보

개정안은 자료제출 대상을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회 활동기간이 중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5항).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u>공직후보자의</u>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 ----- ----- <u>공직후보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중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지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고,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함. 또한, 위원회는 임명동의

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에 따르면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열흘 남짓에 불과하나,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공직후보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의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을 도과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개정안은 자료제출 대상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명시하는 동시에,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회 활동기간이 중지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는 한편, 제출된 자료의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여 인사청문이 내실 있게 실시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자료제출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공직후보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라고 규정⁴⁾하고 있어, 인사청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문언상 인사청문의 대상인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

4)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음.

어 보임.

둘째, 위원회 활동기간 중지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기간이 중지되어 그 중지된 기간만큼 인사청문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공직후보자 임명 지연으로 인한 중요 정책결정사항의 지연 등 행정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된 자료의 제출기간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중지의 기산점 및 만료점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임.

셋째, 자료제출 지연일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⁵⁾

5)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186호)

3.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등에 대한 처벌

개정안은 ① 인사청문 시 공직후보자가 위증에 관한 선서를 하고 허위 진술 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②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자료 미제출, 거짓 제출 또는 누락 제출 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③ 해당 죄에 대하여 위원회가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8조의2).

[표-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 (생략)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 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설>	제16조의2(허위 진술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가 임명동의

현행	개정안
<신설>	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고 전에 하여야 한다.
<신설>	제16조의3(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 위원회로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이 거짓 자료제출 또는 고의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제18조의2(고발) ① 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제16조의2제1항 본문의 죄 또는 제16조의3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가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 및 제14조6)는 증인과 감정인에게 위증에 대한 선서를 받고 이들의 위증을 처

-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증인·감정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③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僞證)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부재함.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⁷⁾는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위원회가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자료제출과 관련한 제재규정은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함.⁸⁾

이에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선서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자료 미제출, 거짓 제출 또는 누락 제출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책임 있고 진실한 답변을 담보하여 보다 효과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① 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참고로, 증인 등의 불출석 등에 대한 조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회관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인사청문회법」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처벌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논거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⁹⁾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는 논거로는 ① 헌법상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의 원칙¹⁰⁾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¹¹⁾ ②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상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타 법률 역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점, ③ 현행법 제정 당시 공직후보자와 국정조사를 받는 증인은 그 신분이 다르고 공직후보자로부터 진실을 답변하겠다는 선서를 받도록 하였음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지 아니한 점¹²⁾ 등이 있음.

반면에, 처벌이 필요하다는 논거로는 ① 공직후보자가 선서 시 사실만을 말한다고 했으므로 허위 진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에 국한되므로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②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

9)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 2010.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10)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11) 대법원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대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 데 있다"고 설시함(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12) 2000. 6. 19, 제212회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자 검증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으므로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제한할 수 있는 점, ③ 후보자에 대한 사실에 관하여 위증한 증인은 형사처벌¹³⁾하면서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 진술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등이 있음.

둘째, 법정형과 관련하여, 공직후보자의 신분, 허위 진술·자료 미제출·거짓 제출·누락 제출의 처벌 필요성,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 측면, 유사 범죄의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형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①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과 관련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 증인의 위증죄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일반법인 「형법」은 증인의 허위 진술죄에 대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각각

○鄭寅鳳委員 (생략) 두 번째로 그러면 과연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공직후보자가 공직에 취임하기 때문에 여러 부원들이나 국민들 앞에서 선서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질을 검증받는 마당에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의 증인과 유사하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선언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심판을 받고 자질을 검증받는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또 잘못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이 그저 공직후보자로써 나는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겠다는 말을 듣는 것 자체는.....그러면 실제로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거짓된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양심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아무런 규정 없이 그저 선서만 듣는 것으로 소위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넘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청문회 존립 자체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하 생략)

○崔鉛熙委員 (생략) 조금 전까지 여기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이 인사청문회 법안에 따른 공직후보자는 국가의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데 이 법안에서 공직후보자는 일반 비리에 관련되었든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정조사를 받는 대상자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허위진술·답변일 경우에는 제재를 받아야 하느냐, 이 점에 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지만 결국은 일반 국정조사의 대상자하고 인사청문회법안의 대상자하고는 신분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점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하 생략)

13) 「인사청문회법」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규율하고 있음.

② 자료 미제출과 관련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거짓 서류 제출, 누락 서류 제출은 처벌하지 아니하고 서류 제출 요구의 거절에 대해서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율하고 있음.

[표-4] 허위 진술 및 자료 미제출에 관한 벌칙 관련 입법례 비교

구 분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허위 진술	처벌 대상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국회 증인의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
	형량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료 미제출	처벌 대상	거짓 자료제출 또는 고의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기관의 장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
	형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셋째, 개정안은 위증 등의 죄에 대한 고발조항을 두어 국회의 자율권 측면에서 국회 내부의 의사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의 고발이 있을 때에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¹⁴⁾

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 위반에 대한 고발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고발 여부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5조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경우 활동기간이 짧아¹⁵⁾ 그 기간 내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등에 대하여 고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로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운영위원회가 대신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¹⁶⁾¹⁷⁾ 실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아니한 국회운영위원회가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이나 자료제출 거부를 처벌하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¹⁸⁾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7

“국회증언감정법의 목적과 위증죄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국회 내부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관한 고발 여부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고, 위증을 자백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자백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는 같은 법 제15조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 15)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 16) 상임위원회 구성 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17) 참고로, 대법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루어진 고발은 동조에 따른 적법한 고발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 18)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270호),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819호),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225호)